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2
----------	-----

2023년 3월 1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 현행화
- 나. 「도서관법」 전부개정('22.12.8.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인용조문 현행화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52호로 제출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일괄정비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13일과 12월 8일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¹⁾ 같은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각각 개정된 조문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른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비롯한 11개의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1)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의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바,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조례들의 개정 사유가 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의 개정은 지난 2021년 1월과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전부 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에 있어 주민들이 공포된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행에 필요한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법률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의 경우에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법률 적용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 동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안이한 입법조치로 조례 개정을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를 “「도서관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156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30조”를 “「도서관법」 제34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도서관법」 제27조” 를 “「도서관법」 제29조” 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 를 “「지방자치법」 제161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